

□動力資源部告示 (第82-17号)

— 石油事業基金의 징수 및 補填에 관한 告示 —

石油事業法(이하“法”이라 한다) 第17條의 3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輸入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가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金額 및 法 第17條의 4 第3号의 규정에 의한 損失補填基準을 石油事業法시행령(이하“令”이라 한다) 第9條의 4 및 第9條의 5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.

1982. 3. 23.

動力資源部長官

1. 石油事業基金의 징수금액

- 가. 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수입원유 1배럴당 美合衆國 통화 2.20\$(비축기금 1.50\$, 安定基金 0.7\$)에 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换率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.
나. 今 제9조의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부담금과의 差額은 1982년 1월 1일이후 선적되어 1982년 3월 10일까지 통관된 原油에 대하여 수입 부담금 인하분(운임, 보험료 포함가격의 0.11%)에 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换率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.

2. 原油 및 石油製品수입에 따른 손실보전기준

- 가. 原油導入先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原油導入 추가운송비의 보전
(1) 原油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는 石油精製業者가 도입선 다변화 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와 당해사가 中東지역으로 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와의 차이를 令 제9조의5 제2항 제3호 및 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매분기별로 산출보전하되 年末에 정산한다.

○ 손실보전기준 : (多邊化운임 × 실지급일의 换率) × 다변화도입물량

中東운임 × 실지급일의 换率) × 다변화도입물량
中東지역 도입불량

(2)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업자에게 전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운송비를 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中東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를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최근년도 실적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 적용한다.

○ 中東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 산출기준 : 최근년도의 실적치 ×

보전대상년도의 World Scale ×
최근년도의 평균 World Scale ×

평균운임요율(AFRA)
평균운임요율(AFRA)

(3) 導入先多邊化 대상지역이라 함은 美洲 및 아프리카地域을 말한다

나. 石油製品輸入에 따른 손실보전기준

令 제9조의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製品의 수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의 기준은 수입석유제품 1배럴당 石油製品의 수입가격(운임, 보험료 포함가격에 수입부대비용을 포함한다) × 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换率에서 국내석유제품의 稅前공장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1. 이告示은 1982년 3월 11일 이후 선적되는 原油分부터 적용한다.
2. 이告示에 의한 原油도입선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原油도입추가운송비의 보전은 1981년 1월 1일 이후 통관된 原油分부터 적용한다.
- 3.. 동력자원부고시 제81-218호(81. 12. 9)는 이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. 다만, 1982년 3월 10일 이전에 선적된 原油와 1982년 3월 말까지 原油공급계약에 의거 선적되어야 할 쿠웨이트 및 민간상사도입 사우디原油에 대하여는 종전의例에 의한다.

*